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세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제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1. ❶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❷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❸세무대리인란을 적습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❺~❸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❹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❿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❿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❾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❷세액감면명세서·❶세액공제명세서·❶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❶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❶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❶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쪽의 ❶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❶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❶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❶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10.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각 서식에서 적을 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접 수 자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 5. 소득공제신고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3. 합계잔액시산표 () 7. 「조세특례제한법」 상세액공제·감면신청서() 4. 조정계산서 () 8. 그밖의 첨부서류 ()		접수일자(인)

작 성 방 법

1.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㉑종합소득금액란: ㉑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3. ㉒소득공제란: ㉒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4. ㉓과세표준란: ㉑종합소득금액에서 ㉒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㉔세율·㉕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6. ㉖세액감면·㉗세액공제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㉖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 또는 ㉗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7. ㉙·㉚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㉙가산세는 ㉚가산세명세서의 ⑦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㉛·㉜추가납부(환급)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㉛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㉜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9. ㉝·㉞기납부세액란: ㉞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및 ㉖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10. ㉟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㉟합계 금액에서 ㉝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㉟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제10쪽 10. 참조).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㉟분납할 세액란에 적고, 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여야 할 나머지 세액(㉟-㉟)을 ㉟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란에 적습니다.
11. ㊱주민세의 과세표준란: ㉑종합소득세 합계란을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㊱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㊱기납부세액(㊱)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㉝)-중간예납세액(㉞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 × 10%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㉕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⑧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㊱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㉕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㉕+㉕-㉕)의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2008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8	0	4,600만원 초과	26	522만원
1,200만원 초과	17	108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거주지국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국인1 / 외국인9 여 1 / 부 2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3성실납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9기장의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⑩신고구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⑨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⑬세무대리인		⑬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⑯대리구분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④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총 합 소 득 금 액 ㉑																		
소 득 공 제 ㉒																		
과 세 표 준(㉑-㉒) ㉓						㉔				㉕								
세 율 ㉖						㉗		10%		㉘								
산 출 세 액 ㉙						㉚				㉛								
세 액 감 면 ㉜																		
세 액 공 제 ㉝																		
결 정 세 액(㉙-㉜-㉝) ㉞										㉟								
가 산 세 ㊱										㊲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㊳										㊴								
합 계(㉞+㊱+㊳) ㊵										㊶								
기 납 부 세 액 ㊷						㊸				㊹								
차 감	납부(환급)할 총세액(㊵-㊷) ㊺					㊻				㊼								
	분 납 할 세 액(45일 내) ㊽									㊾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㊺-㊽) ㊿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11·12·13·15)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2
다. 그밖의 이자소득: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3. ②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⑤ 이자소득명세서

[illegible]

㉑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21~28)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습니다.
 - 나. 기준금액(4천만원)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2
※ 기준금액(4천만원) 이내의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27
 - 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 에 의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대상금액란: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배당소득(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음
7. ⑦배당가산액란: [⑥대상금액×가산율(100분의 15)]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배당소득금액란: [⑤배당액+⑦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⑥ 배당소득명세서

[illegible]

㉑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30
나. 사업소득: 40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③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는 “1” 국외는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 국제청홈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⑧총수입금액란 및 ⑩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⑰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⑥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다. 성실납세: 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⑦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7. ⑨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신고서 제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⑧총수입금액에서 ⑩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소득금액란: ⑧총수입금액에서 ⑨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㉑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㉒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⑪과세기간개시일·⑫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 31”로 기재합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기재하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0. ⑬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⑭특수관계자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가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⑮일련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3. ⑯상호(성명)·⑰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⑱소득세·⑲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하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①소 득 구 분 코 드						
②일 련 번 호						
③사 업 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상 호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신 고 유 형 코 드						
⑦주 업 종 코 드						
⑧총 수 입 금 액						
⑨필 요 경 비						
⑩소 득 금 액(⑧－⑨)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⑬ 대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⑭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⑯상호(성명)	⑰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소득세	㉑농어촌특별세

㉞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1) 갑종(국내)근로소득(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51
 - (2)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2
 - (3)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3
 - (4) 을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5
 - (5) 을종근로소득(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6
 - (6) 을종근로소득[(4)·(5) 외의 을종근로소득]: 57

※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0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7. ⑦소득금액란: ⑤총수입금액에서 ⑥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소득세·⑨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⑥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illegible]

㉑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별 소득금액란: ⑤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⑥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⑦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 및 ⑧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⑩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2. ②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⑩이월결손금명세서의 ②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㉒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발생과세기간·②발생금액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2. ③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㉑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그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수입배당금액(「조세특 례제한법」 제104조의1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 당소득(「소득세법」 제17 조제1항제6호의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illegible]

㉑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⑨)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①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해당 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나. ②추가공제(③~⑧)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③70세 이상인 자란에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고, 65세 이상인 자는 ④65세 이상인 자란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장애인란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⑥부녀자란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⑦6세 이하인 자란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적습니다. ⑧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다. ⑩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2).

2. ⑫~⑫의1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합니다)는 ⑫란에서 공제하고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은 ⑫의1란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3. 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금소득범위내에서 20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4)

4. ⑭퇴직연금소득공제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 중 연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5. 특별공제(⑮~㉑)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⑮보험료공제·⑯의료비공제·⑰교육비공제·⑱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및 제14항).

나. ⑲기부금공제란: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㉑ 또는 ㉒을 한도로 합니다.)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0항).

㉑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10%+[종합소득금액×10%(2009.12.31까지는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㉒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20%(2009.12.31까지는 15%)

㉑과 ㉒의 종합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 등 선순위공제대상 기부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입니다.

다. ㉑혼인·장례·이사비공제란: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장례·이사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9항).

라. ㉑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㉑보험료공제란 내지 ㉑혼인·장례·이사비공제란의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표준공제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1항).

마. ㉑특별공제합계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㉑보험료공제란 내지 ㉑혼인·장례비·이사비공제란의 합계액 또는 ㉑표준공제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㉑의료비공제, ㉑교육비공제, ㉑기부금공제, ㉑표준공제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㉑기부금공제와 ㉑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㉑기본공제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㉑~㉑)는 관련 조문(제목)을 ㉑「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㉑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㉑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㉑코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8.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입니다.

11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 본 공 제(명)				⑮보 험 료 공 제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상인 자(명)				⑯의 료 비 공 제				
	④65세 이상인 자(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명)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⑲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명)				⑳혼인·장례·이사 비 공 제				
	⑧출 생·입 양 자(명)								
	⑨ 계 (③~⑧)								
⑩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⑳표 준 공 제					
⑪인 적 공 제 합 계(①+⑨+⑩)					㉒ 특별공제 합 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⑳ 또는 ㉑)			
⑫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사업자 (⑮+⑰+⑲+㉑)			
⑫의1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⑲+㉑)			
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⑭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⑬기 본 공 제 자 명 세							
관 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 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직계 비속의 배우자=7 (4, 5, 6, 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㉔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㉕코드	㉖금 액	㉗사업자등록번호
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세액감면명세서 및 ㉓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해당 법 조문(제목)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 나.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④배당세액공제의 ㉔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④배당세액공제의 ㉔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다.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라 지급조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4. ③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㉔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3. ③연도란 및 ④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당기 환입액 및 ⑥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㉓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㉔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②코드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㉑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무신고가산세·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2.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3/10,000을 적용합니다.
3. ⑥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4항).
4. ⑩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중 큰금액에 0.5/100을 적용합니다.
6. ①무신고가산세·②과소신고가산세·③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7. ⑤보고불성실가산세·⑥증빙불비가산세·⑦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⑧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㉒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㉑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이자소득란: ⑤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배당소득란: ⑥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㉒사업소득란: ⑦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⑬란의 합계액과 ⑭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㉓근로소득란: ⑧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연금소득·⑩기타소득란: ⑧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⑪·㉔기납부세액 합계란: ①중간예납세액란 내지 ⑩기타소득란의 소득세 금액을 합계하여 ⑪란에 기재하며, ㉑수시부과세액란 내지 ㉓근로소득란의 농어촌특별세금액을 합계하여 ㉔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 준 금 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5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5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40/100	(5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10/100			
④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3/10,000	(5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병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동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사 용	미 개 설·미 신 고		총수입금액 등			0.5/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5/100			
⑫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미 발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 미 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원 천 징 수 납 부 불 성 실			미 납 세 액			10/100	한도		
⑯납 세 조 합 불 납			미 납 세 액			5/100			
⑰ 합 계									
●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㉖			

 란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5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6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6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란: 6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6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15/100)을 적습니다.

7. ⑬·⑭·⑮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9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28·37의 산출세액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6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큰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15·25·34 소득공제란: 11소득공제명세서의 29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19·23·32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4배당세액공제: 39란은 12와 [(30-29)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 합계(⑤+⑥+⑦)	

2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④+⑧)		⑩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⑩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⑪ $[⑩ \times (14/100, 15/100)]$	
⑪ 기준초과금액(⑨-⑩)		⑫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⑫ 배당가산액		⑬ 소득공제	
⑬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⑭ 과세표준(⑫-⑬)	
⑭ 종합소득금액(⑪+⑫+⑬)		⑮ 기본세율	
⑮ 소득공제		⑯ 산출세액	
⑯ 과세표준(⑭-⑮)		⑰ 종합소득산출세액(⑮+⑯)	
⑰ 기본세율			
⑱ 산출세액			
⑲ $[⑱ \times (14/100, 15/100)]$			
⑳ 비교산출세액계(⑱+⑲)			
㉑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㉒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㉓ $[㉒ \times (14/100, 15/100)]$			
㉔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㉕ 소득공제			
㉖ 과세표준(㉔-㉕)			
㉗ 기본세율			
㉘ 산출세액			
㉙ 비교산출세액 계(㉑+㉓+㉘)			
㉚ 종합소득산출세액(㉙와㉙ 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㉛ $[㉚와 (㉚-㉙) 중 작은 금액]$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⑫란부터 ⑮란까지 및 ⑩란부터 ⑪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 부동산임대소득은 “30”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40”으로 한다.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⑫~⑮)과 임차료(⑯~⑲)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⑮·⑲란에 적습니다.
 -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⑫·⑲란에 적습니다.
 -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⑮·⑲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⑳~㉓)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㉓란에 적습니다.
 -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㉓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 ⑪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⑭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9. ⑮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⑯금액란: 1에서 ⑮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⑰비교소득금액란: ⑯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⑱소득금액란: ⑰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⑰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계()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 준 소 득 금 액	필 요 경 비	주 요 경 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③4)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 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⑭)						
		⑯ 필요경비 계 (⑬+⑮)								
⑰ 기준소득금액 (⑨-⑯)(“0”보다 작은 경우 “0” 으로 적음)										
비 교 소 득 금 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⑲ 금액[⑨×(1-⑱)]								
	⑳ 비교소득금액 (⑲×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㉑ 소득금액 (⑰ 또는 ⑳ 중 작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㉓		㉔		㉕		
임 차 료	㉖			㉗		㉘		㉙		
인 건 비	㉚			㉛		㉜		㉝		
계(㉜=㉛)	㉞			㉟		㊱		㊲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⑪주택등매매차익란: 1세대2주택 이상인 자 등의 주택등매매차익을 말하며,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금액(250만원,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⑥세율란 :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4. ⑦산출세액란: ⑩란과 ⑪란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5. ⑧종합소득금액 합계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①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제7쪽의 ⑧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제9쪽의 ⑧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 · 제11쪽의 ⑤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③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②필요경비란: ①총수입금액에서 ③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④소득공제란: 제15쪽의 ②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과 동일하며, ⑩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금액란의 ④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도 같아야 합니다.
6. ⑩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은 ⑫2주택매매차익란부터 ⑮미등기주택등매매차익란까지를 먼저 작성한 후 ⑧종합소득금액합계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㉑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분	㉑종합소득 금액 합계	주택등매매차익 구분						
		㉑합계 (㉑+㉑)	㉑주택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주택등매매차익				
				㉑합계 (㉑+㉑+㉑ +㉑)	㉑2주택 매매차익	㉑3주택 매매차익	㉑비사업 용토지	㉑미등기 자산매매 차익
㉑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㉑필요경비								
㉑소득금액								
㉑소득공제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250만원			0
㉑과세표준								
㉑세율 (8~35%, 50%, 60%, 70%)	8~35%		8~35%		50%	60%	60%	70%
㉑산출세액	㉑	㉑	㉑	㉑	㉑	㉑	㉑	㉑
※ 참고사항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5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6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6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26’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란: 6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6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15/100]을 적습니다.

7. ⑬·③⑩·④③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9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③④·③⑧·④⑧·⑤③의 산출세액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6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⑮·③①·④⑤ 소득공제란: 11소득공제명세서의 ②⑨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⑮⑨·②⑨·④②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4배당세액공제: 57란은 12와 [(④④-(③⑤와 ③⑨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2. ②①·⑤⑤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의 ③소득금액의 ①합계(⑫+⑬+⑭+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 금융소득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 합계(⑤+⑥+⑦)	
■ 2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⑨ 금융소득금액(④+⑧)		④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⑩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④②[④×(14/100, 15/100)]	
⑪ 기준초과금액(⑨-⑩)		④③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⑫ 배당가산액		④④ 종합소득금액(④③)	
⑬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④⑤ 소득공제	
⑭ 종합소득금액(⑪+⑫+⑬)		④⑥ 과세표준(④④-④⑤)	
⑮ 소득공제		④⑦ 기본세율	
⑯ 과세표준(⑭-⑮)		④⑧ 산출세액	
⑰ 기본세율		④⑨ 비교산출세액계(④②+④⑧)	
⑱ 산출세액		⑤①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⑲[⑩×(14/100, 15/100)]		⑤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④⑥-⑤①)	
⑳ 비교산출세액계(⑱+⑲)		⑤③ 기본세율	
㉑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⑤④ 산출세액	
㉒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⑱-㉑)		⑤⑤ 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⑲란 금액)	
㉓ 기본세율		⑤⑥ 비교산출세액(④②+⑤③+⑤⑤)	
㉔ 산출세액		⑤⑦ 종합소득산출세액(④⑨와 ⑤⑥ 중 큰 금액)	
㉕ 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⑲란 금액)		■ 4 배당세액공제액	
㉖ 비교산출세액(⑲+㉔+㉕)		⑤⑧ ⑫와 [(④④-(⑤⑤와 ⑤⑦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㉗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㉘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㉙[㉘×(14/100, 15/100)]			
㉚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⑬)			
㉛ 소득공제			
㉜ 과세표준(㉚-㉛)			
㉝ 기본세율			
㉞ 산출세액			
㉟ 비교산출세액계(㉗+㉙+㉞)			
㊱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㉜-㉟)			
㊲ 기본세율			
㊳ 산출세액			
㊴ 비교산출세액계(㉕+㉗+㉙+㊳)			
㊵ 종합소득산출세액(㉖·㉘·㉟·㊳ 중 큰 금액)			

[별지 제40호서식(2)] 삭제 <2001.4.30>

[별지 제40호서식(3)] 삭제 <2001.4.30>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오니 반드시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산으로 적혀있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 동봉하여 드린 “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Ⅱ)”을 반드시 읽으신 후 이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전산으로 적혀있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자입니다.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됩니다.
2. ⑯금융기관명/채신관서명란 및 ⑰계좌번호란 : ⑮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⑳소득공제란: 제3쪽을 먼저 작성한 후, 제3쪽의 5란 소득공제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㉑세율란 및 ㉒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귀하의 과세표준(㉓)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㉓)×세율(㉑)-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8%	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522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08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3,150,000원인 경우: $13,150,000 \times 17\% - 1,080,000 = 1,155,500$ 원이 됩니다.

5. ㉓세액공제란: 제3쪽을 먼저 작성한 후, 제3쪽의 11란 세액공제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의 10%인 납세조합공제금액과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의 합계액도 적습니다).
6. ㉔가산세란: 제4쪽의 ⑮란 가산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입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등은 기한후신고자 및 수정신고자가 해당되는 경우 적습니다.
7. ㉕원천납부한 세액란: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외판원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 무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세액을 전산으로 적었습니다. 납세조합원천징수세액도 이 란에 적습니다 (잘못 적힌 금액은 수정하여 적으시고,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보내는 사람

주 의	이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서장

□□□-□□□

* 세무서 상담전화:

받는 사람

님 귀하

□□□-□□□

구분	번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항목							
소득공제명세	1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명세				
		구분	인원	금액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추가공제	70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인 자						
		출생·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직계비속의 배우자=7				
인적공제합계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부모, 조부모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3) 자녀가 장애인인면서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4)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없이 공제대상입니다.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경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50만원 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라.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 마.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부양공제대상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시 50만원+초과 1인당 100만원을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항목								금 액	
세액공제명세	2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전액+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가. 법정기부금: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나.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③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③종합소득금액에서 상기 가,나,다의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20%(2009년까지는 15%)]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하되,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종합소득금액에서 상기 가,나,다의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10%+[③종합소득금액에서 상기 가,나,다의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10%(2009.12.31까지는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3	표준공제 60만원						
		4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소득공제 가.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지난 해에 불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불입한 금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지난 해에 불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불입한 금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상 연금보험료공제: 지난 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소득공제 합계(1+2+3+4)						
세액공제명세	7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33)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적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세액공제(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합계(6+7+8+9+10)							

가산세액계산명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신고	부당무신고	미달세액			40/100 14/10,000	(50%)
	일반무신고	미달세액			20/100 7/10,000	(50%)
②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	미달세액			40/100 14/10,000	(50%)
	일반과소신고	미달세액			10/100	(50%)
③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40/100	(50%)
	일반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10/100	
④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3/10,000	(50%)
		미납부(환급)세액				
⑤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계						
⑥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⑦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⑧신용카드매출 전표미발급	발급거부·불성실금액				5/100	
	발급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⑨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급거부·불성실금액				5/100	
	발급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⑩원천징수 납부불성실		미납세액			10/100한도	
⑪납세 조합 불납		미납세액			5/100	
⑫						
⑬						
⑭						
⑮합계						

※ 작성방법

1. ①무신고가산세·②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①무신고가산세·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달세액과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2.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3/10,000을 적용합니다.

3. ①무신고가산세·②과소신고가산세·③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4. ⑤보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⑦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